제 116 호 / 발행일 2013년 07월 30일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eas,or.kr) / 주소 (406-772)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2-1 인천대학교 사회대 창의인재개발학과사무실(13-25호) 발행인 이윤식 / 편집인 김왕준, 이효신 / TEL 011-9952-6559 / E-mail ksseat@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 keas,or. kr)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주론

지방교육자치의 선진화*

최준렬 | 공주대학교

1. 서언

2010년 2월에 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때 개정된 주요 내용은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교육감의 자격 등이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이다. 즉, 2014년 6월 30일까지만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출이 없어지고, 교육의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도 구성하지 않는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격기준도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누구나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이다.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심의 · 의결 기관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에 관해 독자적으로 심의 · 의결하는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교육자치를 하 지 않겠다고 규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4항,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신과 위배된다고할 수 있다.이 법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자치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자주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고, 특정 정당과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문가에 의해 자치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크게 훼손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1945년 미군정하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 현행 교육자치를 실시한 뒤에도 많은 논의와 개정을 거듭해와 2010년 2월 26일에 최종적으로 개정되

^{*} 본 원고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자치에 대한 의견을 공론회하기 위해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제27집 제 호(2012년 8월)에 실린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하였음.

었다. 개정된 현재의 법령을 기초로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인 지방분권, 주민참여,분리·독립, 전문적 관리, 자주적 재정에 비추어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이의 선진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지방교육자치의 의미와 기능

가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지방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이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이라는 지역적 자치를 결합한 형태로 지방자치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과 책임 하에교육·학예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자주적인 교육재정과 독자적인 예산회계로 지방교육사업을 관리하는 제도이다(김병준, 1998 6'.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이지만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확대하고,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특별한 교육을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유정일 외, 2008: 375'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을 영역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에 의해 교육을 수행하며,정치적으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수행하는 교육활동이다.이런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는 교육자치의 기능에서 보다 깊게 논의된다.

나. 지방교육자치의 기능

지방교육자치의 기능은 교육자치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의 절에서 논의된 의미를 기초로 지방교육자 치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주민자치,일반행정으로

부터 분리 · 독립,전문적 관리, 정치적 중립, 자주적 재정을 들수있다.이들 기능을 김종철(1982 174-176은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로 제시하면서 지방분권, 민중통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 전문성을 들고 있다. 정치적 중립과 자주적 재정을 제외하면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일치한다. 민중통제와 주민자치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같다. 민중통제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이들은 서로 같은 의미를지닌다.

현행 교육자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선진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이 제시한 4가지 원리 이외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적 재정이 필요하다. 교육이 특정한 정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이 추구하는 독자적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교육자치가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여 독자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 주민자치,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 전문적 관리, 정치적 중립, 자주적 재정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기능을 논하고자 한다(임연기 · 최준렬, 2010: 240-242).

첫째,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지방에 위임하거나이 양하는 기능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와 지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교육행정을 민주화하기 위한 기능이다. 지방분권을 수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지방의 권한을 중앙에 되돌려주는 중앙집권화 현상이 나타나기도한다.지방분권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할 사항은 분권의 단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이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자치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주민자치는지방분권에 의해 주민에게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는 기능으로 교육행정이 국가기관이나 관료에 의해서 집행되는 관치행정과 달리 지역주민의참여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해야 한다는 기능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교육행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활동이다.

셋째,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은 교육행정이 일 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교육 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거국적인 관 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 인사, 재정,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사업의 특 수성을 이해하고 그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하는 기능이다.

넷째,전문적 관리는 교육의 본질과 교육활동 및 교육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 적 식견과 기능을 갖춘 인사들에 의해서 교육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위한 기능이다. 즉, 교육 과정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행정의 내용과 대상도 일반행정의 대상과는 그성격이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특수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 을 갖춘 행정요원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정치적 중립은 교육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에 따라 교육활동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이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교육활동,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활동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되, 특정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거나 일부 정파의 이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자주적 재정은 자치를실현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를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자주성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3.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다. 교육자치가 수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를 살펴볼 수 있고,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지방교육자치의기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능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지방분권의 실태와 문제

지방분권의 실태와 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할수 있다. 하나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얼마나 이양이나 위 임하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의 단계가 어디까 지 이루어 졌는가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지방분권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중앙의 권한이 얼마나 지방에 위임되었으며, 위임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기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위임된 각종 권한을 분석하여 중앙에서 수행해야 할 권한, 지방에서 수행해야 할 권한을 분류하고,이런 분류에 따라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가를 분석해야만 이의 실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류 자체도 객관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치이가 있다. 따라서 분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규명되지 않은 채학자에 따라 중앙에서 수행해야 할 권한, 지방에서 수행해야 할 권한을 구분하는 정도이다. 비록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국가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 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여타 핵심 기능 은시 · 도교육청에 이양할것을 밝힌 바 있으며(교육과학 기술부, 2008: 4),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을 발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 13건을 시 · 도교육 감에게 이관할 것을 밝혔다. 이런 의도에 따라 교육감에 게 이관하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 13건은 2008년 11 월 12일에 「초·중등교육법」개정인에 담아 국회에 제출 하였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권 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국회에서 법률인이 통 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지만, 이양한 경우에도 관행과 교육과학기술 부의 행정통제로 인해 중앙집권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도 많다.이런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이 명백히 규정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며,지방자치의 전통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하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분권의 단계는 광역수준이다. 교육자치는 광역자치이기 때문에 일반자치와 달리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자치는 기초자치까지 실시하고 있는 일반자치와 자치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에 연계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자치의 기본은 주민자치이다. 권한이 분권화되어 주민에게 주어졌을 경우 주민의 요구와필요에 따라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을 수행하도록하는 것이 교육자치이다. 그런데 광역 수준의 교육자치는 범위가 너무 넓고, 대상이 많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나. 주민자치의 실태와 문제

주민자치는 지방교육에 주민이 참여하는 활동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주민참여예산제³ 등과 같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과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간접참여 방법이 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직접참여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의 희망과 요구에 맞게 교육이이루어질 때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런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주민자치는 지극히 한정된 범위의 자치라할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할 있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2006년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민이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선거에서 모든 주민이 교육의원을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의원과 교육감 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다. 이런 제도는 2006년이전보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으나

¹⁾ 시·도교육감으로 이관되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총 13건으로 개선 1건, 위임 2건, 이양 10건이다. 개선대상은 초·중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인기를 공시로 대체하는 것이며, 위임 대상은 교장 신규 및 승진 임용(대통령-)교육감)과 시·도교육청 국장이상 정학관 등 임용권(장관-)교육감)이다. 이양 대상은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해제 장학지도 실시, 연구학교 지정 운영, 타시·도 인사교류, 시·도교육청 소속 연구기관 설·폐권, 국립유치원 장학지도,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장관의 학교평가 권한 등이다. 2008년 11월 12일에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인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다(송기창, 2010년; 40일)

²⁾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절차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는 제도,

아직도 지극히 한정된 참여에 그치고 있다. 선거와 소환 제,참여예산제 등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절실한 주민 자치라 할 수 없다.

주민이 교육자치에 직접 참여하여 피부에 와 닿는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청원,의견제안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네가 필요로 하는 교육, 나에게 도움 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가쉽게 반영될 수 있는 주민차지의 틀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범위와 권역이 작아져야 한다.

다.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의 실태와 문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의 실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위원회를 보면 시 · 도의회에 교육 ·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두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조), 교육위원회는 시 · 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의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일반의회에 통합되어 있으면서 교육의원만이 소속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시 · 도의회에 완전히 통합된 의결기관도 아니고, 교육 · 학예에 관해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분리형 의결기관도아니다.시 · 도의회에 반쯤 몸담고 교육과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집행기관으로써 교육감은 시 · 도지 사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형 집행기관이다.

지방교육자치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교육이 장기성, 비긴급성,효과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행정이일반행정과 통합되었을때 교육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없어교육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능이 일반행정과 분리 ·독립 시키는

일이다.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분리 ·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의 대립이 극심하다.분리 · 독립을 주장하는 측은 주로 교육학자로 교육의 지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이 가지는 장기적 투자, 비긴급성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분리 · 독립되어야 하며,이런 차원에서 교육위원회도 독립형 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에 분리 · 독립을 반대하고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주로 행정학자나 경제학자이며 이들은 교육기관을 일반행정기관으로 분리 · 독립시키는 일은 한국의 특유한 것이고 그 이론적 근거도 명백하지 못하며,지방교육 권력의 독과점을 위해 만들어진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교육에 대해서도 시 · 도지사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기우, 2009: 9: 김성호, 2006: 47).

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교육에 관해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부지 확보,학교급식제공,기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김성호, 2005: 47)이다. 그러나 조동섭(2010 50의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의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44.1%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통합되지 않아도 재정지원이나 협조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반행정과 분리 ·독립되는 교육자치의 정신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소재나지원의 문제라기보다는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에 맞게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정신이다. 이런 정신은 한국만의 특이한 점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교육구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일반행정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자치에 통합

된 일본의 교육자치도 시정촌의 경우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에 관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2014년 6월 30일 이후에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때가 되면 시·도의회 의원이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자치의 한 축인 교육위원회의 기능이약화되거나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 전문적 관리의 실태와 문제

전문적 관리는 교육행정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능을 갖춘 인사들이 교육지원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해 야하는 기능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다. 그동안 15년, 10년, 5년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어 왔고 2014년 이후에는 이 조항도 삭제될 예정이다.

교육의 전문적 관리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기능이다. 교육전문가가 교육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집행하도록 해야 교육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꼭 교육경력을 갖춘 자격자가 임용되는가,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5년이면 충분한가 등이 비판적 시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수치로 나타내거나 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5년의 자격요건을 제시한 것은 최소한의 기본요건이고 충분요건은 아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임연기, 201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치인이 되고,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되고하는 비판적 시각도 그런 사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송기창(2010): 412)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최소의 기준마저 삭제함으로써 교육자치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

마. 정치적 중립의 실태와 문제

정치적 중립은 정치세력이 교육내용과 활동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측면과, 교육자 혹은 교육전문가가 학생에게 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에 편향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을 의미한다(허종렬, 2007: 134).

교육이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세력이나 집단,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편향된 교육을 받아서는 안됨을 천명하고 있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원이나 교육감 후보자에게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동안 2년 이상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1년으로 줄이고 있는데 이 기간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간인 가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바. 자주적 재정의 실태와 문제

재정의 독립은 교육자치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이다. 재정이 독립하지 않고 자치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재원을 지원받으면서 지원하는 쪽의 간섭과 지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는 재정이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총 48,020,479백만원 중 시·도교육청 자체수입은 1.700,880백만원으로 35%에 지나지 않는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1). 3.5%의 재정으로 교육자

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유·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이 많아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테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자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 술부에서 총액교부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같은 차원에서 시·도청도지방 자치단체전입금을 총액으로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교부금과 전임금 때문에 교육 자치가 가능하다.

총액으로 교부되는 재원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를 실 시하고 있는 현재의 자치는 한정된 자치이기 때문에 주어 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뿐이다. 보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지방교육자치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앞에서 논의된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를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의 선진회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기초교육자치제 실시

지방교육자치는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한다.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제시하고 이를 수렴하여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핵심이다. 이런 기능이 활성화되기위해서는 교육자치의 단위가 작아야한다. 주민들이 쉽게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기위해서는 교육자치의 단위가기초자치가되어야한다. 그동안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자치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력도 어려웠다. 기초자치와지역교육지원청 간의 연계와 협력을 수행하고자 해도 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치원

정보다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 기관 간의 협력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광역교육청-지역교육지원 청 간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기능이 명확 히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 또는 업무의 혼 선이 초래되며,중앙집권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 다.교육청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교 육청이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 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역할 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 야 지방교육자치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주민 발의제 확대

주민자치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주민은 교육자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2010년 직선제 이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 응답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65로 다른 여러 질문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교육자치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김혜숙외, 2011: 13.

주민에게 다가가는 교육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이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규모가 작아야 하며, 작은 규모 속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 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 발의제이다. 주민이 원하는 교

육활동을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수렴하여 정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위한 교육위원 회 기능 유지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이 분리 · 독립되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유지 되어야 한다. 교육자치는 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과 교 육감의 집행기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심의 · 의결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시 · 도의회의 의원으로 대체된 다면 교육자치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심의를 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기본적 틀이 붕 괴되어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제 기된다. 2014년에 중지되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하 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계와 교육계는 함께 노력해야 할필요가 있다. 교육위원회를 유지하고 상임위원회 기능 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기능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절충형 교육위원회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표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단위 빈도)

문항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대표자 선출이나 정책형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1071	4.11	0.86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독립	1071	4.32	0.82
교육전문가에 의한 관리	1071	4.42	0.78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071	4.48	0.77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의 자치	1071	4.02	0.9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통한 행재정의 효율성	1071	4.00	0.86

자료: 김해숙외(201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감 및 교육위원 회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연세대 교육연구소

라. 전문적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교육감 및 교육의 원 자격 유지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다른 점이 전문적 관리이다. 교육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모두에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이 자격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보다 강화해야 한다. 여러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격 요건의 기간이 짧아져 왔는데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 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김혜숙 외(2011)의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이 이 기간의 연장을 희 망하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관리의 중요성을 5점 만점 에 442로 응답하고 있다(표 1 참조). 교육에서 전문성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비정당원 기간 강화

정치적 중립성은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수행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로 김혜숙 조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의 조사에서 보면 교육에 관한 심의 · 의결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이 왜곡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교육은 위정자나 정파의 도그마가 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우려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위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비정당원이 되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않다. 종전처럼 2년으로 연장하여 정당에 관여한 사람을 배제하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자주적 재정 확립을 위한 조세권 도입

교육자치에서 재정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초 · 중등교육에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 보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교육청에서 자체 수입의 비율이 전체 재원의 3% 밖에 되지 않고 이들 수입 이 학부모의 수업료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재 원을 늘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런 제약 때문에 자 주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왔다. 그렇지만 교육자치의 장기적 발전을위해서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 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개 선하여 교육청에서 조세권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있어 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 · 도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조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어야 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분 하고 시 · 도청에 전입하는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의 교육발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야한다.

5. 결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와 기능,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 선진화 과제를 살펴보았다.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이 2014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일몰제 법안이다.이법안에 의하면 교육의원 폐지,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폐지이다. 이들폐지되는 법안은 교육자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교육자치의 핵심이고, 전문가에 의해 교육자치를 시행하는 것도 일반자치와 다른 교육자치만이 요구하는 특성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폐지되는 2014년 이전에이런 기능을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본래의 기능을 실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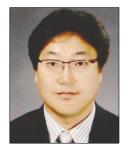
수 있도록 함께 중지를 모으고 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절실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실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2008320.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2011.
- 권혁운(2011). 교육감 직선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교육정 치학연구. 제18권 2호. pp. 33-56.
- 김병준(1998. 교육자치제의 개선. 한국지방자치학회 연 구보고서 98-1.
- 김성호(2005). 교유자치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지 방자치 2005.2 현대사회연구소.
- 김승훈(20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분석.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2호. pp. 133-162.
- 김용일(2010). 교육의원 선거 관련 법률 개성 과정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Vol 28 No. 4 pp. 187-207.
- 김종철(1982.교육행정의 이론과실제.교육과학사.
- 김혜숙 외(201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 감 및 교육위원회 선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 학회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수정(2011).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분석. 교육정치학연구. 제18권 2호. pp. 183-208.
- 박수정·박선주·박진영(2011).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1991-2010). 교육행정학연구 Vol. 29. No. 2 pp. 261-288.

- 성수자(2011).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 확보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기창(2008.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과제. 교육 정치학연구.제 15권 1호. pp. 33-55.
- 송기창(2010a).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교육정치학연구.제17권 4호.pp. 121-145.
- 송기창(2010b).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Vol 28 No. 4 pp. 405-429.
- 윤정일 · 송기창 · 조동섭 · 김병주(2008). 한국교육정책 의 쟁점.서울: 교육과학사.
- 이기우(2009).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평론. 2009.5.
- 이미연(2002).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교육재정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기(2010).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행정 전문가의 인식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Vol. 28. No. 4. pp. 139-162.
- 임연기·최준렬(2010). 교육행정 및 경영 탐구. 공동체.
- 정영수(2009. 지방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지역발전위원회.
- 조동섭(2010).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 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Vol. 28 No. 4 pp. 43-61.
- 하봉운(2011). 일반자치 -교육자치 단체 협력 현화과 과제.시·도교육청 -시·도청 협력 강화 방안.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허종렬(2007).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교육법화연구. 19(2). 127-150.
- 홍성원(2009).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자치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ㅣ논단 I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발전을 위한 과제

박주형 | 한국교육개발원

Ⅰ 들어가며

2013년 현재 우리나라는 약 2조 400억원 의 예산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Official Development Aid에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급(이하 EDCF)을 비롯한 29개 부처 및 기관에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1987년 02억불, 2011년도에 132억불이 ODA 사업에 투자된 것을 고려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ODA 활동은 급증하고 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ODA 사업은 국민적 지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한국 갤럽이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ODA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공감(응답자의 90.8%)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ODA 제공에 대해서도 상당수(응답자의 8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12).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ODA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점차 더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 내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주관하는 개

발원조위원회(이하 OECD DAC*)에 24번째 국가로 기입하였고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25% 수준까지 ODA 규모의확대³를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4)에서 새로운 원조효과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조명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ODA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변화한 유일한 국가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 공여국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되고 있다. 특히, 한국적 발전모델을 ODA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ODA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는 ODA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매우 특별하다.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발전의 연계성을 인정하고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동인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제언이나 교육발전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교육분야의 ODA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Gobal Korea Schokrship(GKS)*이라는

^{1) 20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ODA 규모로 실제 집행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조 411억원 중 양자 원조는 1조 4255억원 다자 원조(국제 기구 등에 지원는 6,156억을 사용할 예정이다. 양자 원조의 경우에는 무상예산이 7,569억원 유상예산이 6,686억원이다.

²⁾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3) 2012}년의 명목 국민총소득(GNIII)이 약 1,277조임을 고려할 때 약 3조 2000억의 예산이 ODA로 활용될 때 국민소득의 0,25%를 달성하는 것이다.

⁴ GKS는 2010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ODA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유능한 인제들을 선발하여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학위과정 혹은 연수를 시키는 것이다.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초청장학생 교류지원 시업은 2010년 113개국의 700여명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KOICA는 ODA 5대 중점 분야 중하나로 교육분 야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원조활동(전체 예산의 15% 정도를 교육에 할당)을 벌이고 있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 설립, 기초교육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립 사업 그리고 고등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개선 지원 등의 원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EDCF의 경우에도 2012년 기준 30개 사업에 약 7,000억(전체예산의의 8.7%)을 교육부분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분야 세계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2015년 예정된 세계교육회의는 역사적으로 1990년의 1 차회의(좀티엔 회의)와 2000년 2차회의(다카르회의)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교육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우리나라로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교육회의는 교육분야의 대표적 사업인 Education for all(EFA⁶)이니셔티브를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의제를 제안하는 자리로 글로벌 교육협력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ODA 목표인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²)의 2015년 의제 재설정과 post EFA 논의가연계된다는점을 고려할때 2015년 세계교육회의는 세계 ODA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교육 ODA 사업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반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선진 공여국이나 국제기구가 70여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짧은 기간에 달성하고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

했으며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ODA 사업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점도 많았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ODA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 교육행정학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무 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 ODA발전을 위해 교육행정학 혹은 교육행정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논의하고자한다.

II. ODA 의의 및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ODA) 경험

1) ODA의 개념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 국 또는 국제기구에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사회발 전을 위해 지원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증여, 차관, 기술원 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ODA 는 공여주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기업이나 단 체의 원조를 포함하지 않으며, 수원국이 OECD의 분류상 개발도상국(중소득 이하의 국가) 및 국제기구일 때 ODA 라할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진국들인 공여국이 개도국인 수원 국에 일방적인 원조를 하는 것을 넘어 특정 국가가 협력 대상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하여 민간에 의한 다양한협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조가 아닌 총체적 협력을 강조한다.

⁵⁾ 교육 이외의 중점 분이는 보건의료, 행정제도, 지역개발, 산업/에너지이다.

⁶⁾ EFA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2015년까지 실현하기 위한 의제로 6개의 목표①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확충 ②초등교육 보편화 ③청소년과 성인의 생활기술증진 ④ 성인 비문해자 50% 감소 ⑤교육에서의양성평등 실현 ⑥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를 달성하자는 국제사회의 다짐이다.

^{7)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이니터티브로 2015년까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8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파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암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리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ODA라는 용어보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표현을 좀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ODA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무총리 산하 기관의 명칭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점에서 과거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수원국에서 원조하는 관점을 넘어 양당사자국기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이 두드러지고 있다.이글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라는 보다 좁은 관점에서 교육 ODA에 대해 다루고자한다.

2) ODA의 목적

현재 활발하게 ODA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과거 많은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배를 시행했거나 초일류 국가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진 공여국들은 호혜적 입장에서 혹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를 총괄하고 있는 OECD DAC에 따르면 ODA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인도주 의적 동기에 기반을 두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둘째, 진보된 이기심의 차원에서 개발이 수원국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수원국의 개발은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지구촌시대에 저개발국가들의 문제가 선진 공여국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

지 · 경제적 불안의 원인인 빈곤을 제거합으로써 공여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적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 존재하는 여러 세계적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ODA가필요하다(한국해외원 조단체협의회, 2010. 이와 더불어 ODA가 본격화되고 확대된 것이 과거 마샬플랜⁸과 같이 자유주의의 수호라는 정치적 이유 및 최근 중국의 자원확보 목적의 원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질수 있다.

교육 ODA도 이러한 OD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즉,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받은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경제 발전이나 국가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특히,교육이 인적자원을 개발합으로써 저개발국가의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 많은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가능케 하는 요소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외재적 목적이 강조되고 있다.

3) 우리나라 ODA 경험

우리나라의 장·노년층에게 ODA는 낯선 것이 아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99년까지 ⁹ 국제사회 (UN, World Bark, IMF, U.S.A., Japan 등)로부터 12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교과서들은 유네스코(UNESCO)와 운크라(UNKRA ¹⁰)의 지원을 받아 보급되었으며 초등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학교설립 역시 국제기구와 선진 공여국들에 의한 원조로 이루어졌다.

^{8) 2}차대전 이후 1947년부터 1951년까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리에 대해 행한 대외원조계획으로 1948년부터 1951년 동안 120억 달 러에 달하는 비용이 활용되었다.

⁹⁾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난 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OECD DAC의 분류상 공적개발원조의 대상에서 벗어난 1999년을 ODA 수원국 졸업시기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10) 1950}년 12월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의 부층과 재건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1958년까지 한국의 산업 교통, 주택, 의료 및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펼쳤다.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자금은 시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1945년~1960년까지의 무상원조를중심으로 한 긴급구호기와 1961년부터 1999년까지의 유상원조를중심으로 한 차관도입기가 그것이다. 전기의 경우주요 원조주체는 미국의 AID이었으며 후기의 경우 세계은행이 큰 기여를하였다(이찬희외, 2009).

한국교육발전을 위한 ODA 원조는 학교설립이나 교과서 지원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는 초·중학교 발전사업(E-M Project)을 위해 75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1972년 설립될 수 있도록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일정 수연구원들에게 장·단기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윤정일, 2013).

ODA 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는 1963년 USAID의 원조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인력에 대한 위탁연수를 시행하고 1965년 우리나라 재원으로 개도국 연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ODA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1980년 대 중ㆍ후반부터 다양한 형태로 원조를 시작하였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을 설치해 유상원조를 시행하였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설립되어 무상원조가 시작되었다. 원조규모는 1987년 약 2000만 달러(GN의 002%)에서 2011년 13억 달러(GN의 012%)로급증하였다.

Ⅲ. 교육 ODA 현황

1) 교육 ODA 사업 추진 체계

우리나라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집단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KOICA 와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 행 내 EDCF 그리고 각 행정부처(중앙 및 지방)들 개별적

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ODA 사업이 개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원조의 통합성을 이루고자 ODA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기관인 KOICA와 EDCF를 비롯하여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발전적 ODA 추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교육 ODA는 크게 교육부, KOICA 그리고 EDCF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각종 공공기관인 자치행정기관 및 교육청에서 교육분야의 ODA가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경기도가남미의 권역기구인 이베로 —아메리카 국제기구(OEI)와 교류협력을 통해 '교육의 빛'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이영규, 2012.11.26).

2) 교육 ODA 현황

우리나라의 교육 ODA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육부, KOICA EDCF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총액은 〈표 1〉과 같다. 총 ODA에서 교육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8%~27% 사이로 연도별로 편차가 있는 편으로 2010년의 경우 대략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지원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우리나라의 교육 ODA 현황 및 비중 (단위: 빈도)

연도	총ODA	교육ODA	교육ODA /총ODA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일반
'02년	254.5	69.5	27%	0.20	29.34	7.29	32.66
'03년	316.6	58.94	19%	0.38	43.99	6.58	7.99
'04년	483.45	74.13	15%	0.68	30.93	27.42	15.09
'05년	657,79	50.17	8%	1.09	13.74	7.60	27.74
'06년	675.5	135.15	20%	1.40	67,30	19.48	46.98
'07년	1,053,26	160.17	15%	5.37	36.70	81.67	36.42
'08년	1,454,95	112.46	8%	13.15	67,30	23.22	8.80
'09년	1,450.15	139.02	9.6%	5.17	65.47	24.80	43.04
'10년	1809.58	324.4	14.91		104.52	149.44	55.53

출처: 윤종혁 외(2012), 한국의 교육ODA 실천전략 연구, p. 34의 〈표 II-7〉

교육 ODA에서 교육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낮다. 2011년 기준으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약 412억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70%를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외에는 다자협력인 국제백신연구 소 운영지원과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신탁기급에 활용하였다.

KOICA는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 전체 예산(4,974억)의 약 135%인 672억 가량을 교육분야에 지원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국가별협력프로그램으로 활용하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50%의 재원을 활용하였으며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지원을 가장 비중 있게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티모르 교과서 보급사업, 에티오피아 중학교 건립사업, 엘살바도르 취약이동 지원사업 등이 있다.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EDCF 프로그램은 2011년말 누적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약 9%를 교육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약 30개 사업에 7,370억 규모의 재원을 대학설립, 직업훈력 및 교육정보화사업에 차관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빙글라테시 ICT 교육훈련센터 사업,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 및 니카라과 직업훈련소 확충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Ⅳ. 교육 ODA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교육행정 학계의 역할

1) 교육 ODA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들의 국가발전 모델로서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이 주목받아왔다. 특히, 2009년의 OECD DAC 가입과 2011년 제4차부산 원조총회(HLF-4) 개최와 2015년 예정된 세계교육

회의는 국가위상에 부응한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어 야 하는 과제를 우리나라에게 부여하고 있다. 빈곤퇴치라는 국제적 과제 속에서 교육을 통해 인권증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수원국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기관들이 세계 곳곳에서 교육 ODA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점에 부딪치고 있다.

먼저,교육 ODA 시행의 단절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는 교육 ODA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의 교육역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건립이나 일부 유학생 교육 등의 단기적인 사업이 진행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교육 ODA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 KOICA 및 EDCF와 조정기관으로서의 교육협력개발위원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개별 사업단위로 교육 ODA가 이루어지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컨대, 현재 총리실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별지원계획에서 교육분야가 포합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한목적을 위해 교육부나 기타 공공기관이시행하고자 하는 교육 사업이 해당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교육 ODA의 대부분은 직업훈련 분야나 고등교육분야에 편중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 한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간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있 다. 저개발국가의 경우 인권치원에서 기초교육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이 국제수준 의 교육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한계를 지닌다. 이는 ODA의 목적인 공여국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수원국의 역량개발 및 국가발전임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에 대한 협 력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어떤 전략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경험을 저개발국가의 수요에 맞게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와 우리나라가수원국인 저개발국가와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교육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있는 지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ODA의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ODA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확대할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다수의 국민이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혹은 ODA 사업의 책무성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 ODA의 국민적지지를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왜 국민복지에 투자할 예산을 아프리카 학교건설에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학교건설 사업이 아프리카국가의 부패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몇 년 후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해 학생이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면 여론은 ODA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인력의부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평가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한계를 보인다. 먼저, 교육 ODA를 시행하고 발전시킬 전문가들의 부족은 사업진행의 효과성을 낮춘다. 교육전문가와 ODA 전문가들 사이의 교육 ODA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ODA 사업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전문가의부족은 대표적인 교육 ODA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제한시키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DAC 회원국들은 World Bank주도록 시행되고 있는 Fast Track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듯이 전문가의 부족은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제한할수 있다.

2) 교육행정학의 역할

교육 ODA 발전을 위한 교육행정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를 논의하기 이전에 교육 ODA가 교육행정학의 영역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교육행정학에 대한 대상으로 해외(국제) 교육협력을 포함하고 그 내용으로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교육활동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다루고 있다는 점(허병기, 2003을 근거로 교육 ODA 역시 교육행정학의 연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학의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수원국에서 필요한 교육 ODA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집행과 조정 그리고 평가 등의 활동은 교육행정학의 연구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교육 ODA의 문제점 모두를 교육행정학 이 해결할 수 없지만 교육행정학계의 관심을 통해 우리나 라의 교육 ODA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교 육행정학의 과정요인에 따라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그 리고 평가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개별 교육 ODA의 효 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 ODA는 기본적으로 수원 국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분석과 수원국의 교육현황 진단을 통한 적합한 교육계획의 수립이다. 또한 모니터링 을 통해 교육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를 통한 피드백으로 사업의 성과 를 유지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사업시행 전 과 정에 걸쳐 교육행정학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컨대, ODA 사업은 ODA 확대라는 국가적 기조에 맞춰 여러 대학이 전공을설치하고 많은 공공 및 민간기관이 사업에 참여함 으로써 연관사업이 형성되고 있다. 교육부, KOICA 및 EDCF에서 매년 연구 및 사업제안을 공모하고 있으며 개 별 국가의 교육수요 및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교육행정학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교육경제학적 관점에서 교육 ODA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원국의 교육재정의 확립을 위한 컨 설팅을 교육재정학적 접근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교 원교육학적 접근으로 교육 ODA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원국의 교원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을 설계 ·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교육 발전경험을 통한 한국형 콘텐츠 개발 및 정책컨설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교육행정학은 교육 ODA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 ODA 지원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협력과제의 발굴, 지원 및 평가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 ODA 거버넌스는 위에서 논의한 대로 총리실 산하 위원회와 교육부, KOICA 및 EDCF로 대변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구의 협력필요성이 강조되고 국제적 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성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ODA의 기능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구축을 교육행정학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특히,부산에서 열렸던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제가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점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개선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김태완, 2012).

마지막으로 교육 ODA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역량강화이다.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교육 ODA를 위해서는 국제기관 및 선진 공여국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 ODA를 현지에서 실현하고 모니터링하는 현장요원들도 중요하다.이러한인력들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식적인 양성과 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교육전문 가나 교육 ODA 실천가는 교육영역과 국제개발영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이러한역할에 교육행정학 영역만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나 지속적인 학계의 관심을 통해 잠재적인 인력양성을이끌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212).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 획(안)
- 김태완(2011).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ODA)의 과제와 전 망. 제1차 교육개발협력(ODA) 정책포럼.한국교육개발 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12).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 윤정일(2013. 꿈을 이루려면 포기하지 마라. 강원: 민사고.
- 윤종혁 외(2012. 한국의 교육ODA 실천전략 연구. 한국교 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2-18.
- 이영규(201211.26). 경기도 중남미 문맹퇴치 나선다. 아 시아경제.
- 이찬희 외(2009).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한 국교육개발원 CR 2009-37.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201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입문. KCOC.
-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2012). 숫자로 보는 ODA: 2012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 허병기 (2003).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1(1), 375~396



논단Ⅱ

일본의 학생체벌 관련 현황

송선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때돌림·집단 괴롭힘 등을 일컫는 어휘 "이지메(나는 め)"가 일본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가 가벼운 수준의 문제가 아님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일본에서는 따돌림 및 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학생문제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 정립 방안의 하나로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와 정부는 '문제행동'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각 문제행동별로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및 학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는데, 우선 가장 큰 문제인 등교거부와 이지메'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에 힘쓰고있다. 문부과학성은 이지메를 "학교 안팎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보다 약한 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구체적 · 심리적인 공격을 계속하여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것(2005년 정의)", "학교 안팎의 장소를 불문하고 해당 아동 · 학생이 일정한 인간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심리적 · 물리적인 공격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2006년 정의)"등으로 규정하였다. 「이지메 문제에 관한학생 실태파악 긴급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학기의 이지메 발생건수는 약 144,054건으로 보고되었다. 동종 조사인 「학생의 문제행동 등 학생생활지도 상의 문제점에

관한 조사」에서는 2011학년도에 70,231건, 2010학년도에 77,63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각 1년 간), 1985년 이후 30억년 간의 조사 추이를 보면 매년 평균 30,000~40,000억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문부과학성, 2013 5. 2² 정부와 학교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각 학교와 지역 교육위원회에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2006년부터 보정예산에 따라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전국 통일 상담전화체제를 운영 하는 한편,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이러한 매체 상에서의 이지메 관련 대책도 확대하고 있다(문부과학성, 2009. 1. 30. 4

〈표 1〉최근 3년간 이지메 발생 건 수

	2012학년도 1학기	2011학년도	2010학년도	
소학교	88,132	33,124	36,909	
중 학교	42,751	30,749	33,323	
고등학교	喜草 12,574 6,020		7,018	
특수학교	597	338	380	
 계	144,054	70,231	77,630	

RE: 문부과학성(2013, 5, 2), 체벌금지에 관하여, 体罰の禁止について.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 Files/afieldfile/2013/05/02/1334083_01.pdf, p. 8.

¹⁾ 우리나라에서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원문을 살려 칭함.

^{2) 1985~1993}년 1994~2005년 2006~2011년, 2012년에 실시한 조시는 각각 다름.

³⁾ 운영주체는 각 도도부현·지정도·시교육위원회로서 상담전화는 전국이 동일함(0570-0-78310).

⁴ 문부과학성(2008. 7. 25). 학생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관련 문제해결 대책마련에 대하여(児童生徒が利用する携帯電話等をめぐる問題への取組の徹底について), 문부 과학성(2008. 11). 교장・교사를 위한 인터넷 상의 이지메 대응 매뉴얼・사례집(ネット上のいじめに関する対応マニュアル・事例集学校・教員向け) 등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일본의 교육법에서는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교육법안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서는 학생 징계나 체벌과 관련한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학교교육법(최종개정 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제11조에서는 "교장 및 교사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 및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은 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은 체벌을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학생의 심신에 심각한 약영향을 주고, 교원 및 학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 하였다任부과학성, 2013.3 130.

최근 문부과학성은 교내 특별활동부에서 체벌로 인한 고교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2012년 11월, 오사카 시),각종 규정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학생체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3년 1월 23일 통지문(「체벌금지의 철저 및 체벌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 파악에 대하여 🕽을 통해 전국의 교육위원회와 각 학교에 체벌금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문부과학성의 초등중등교 육국 및 스포츠·청소년국을 주축으로 하여 2013년 3월,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부속학교를 설치한 국립대학법 인 및 재단 등에 「체벌금지 및 아동이해에 기반한 학생지 도 , 사항을 통지하였다.이 통지에서는 1) 체벌금지 및 징 계처분의 의미, 2 징계와 체벌의 구별, 3 정당방위로서의 체벌의 책임면책, 4 교사교육과 교장의 의무 등에 관한 사 항을 설명하고,특히 체벌방지에 관한 교원간의 의견교환 및 교장의 실태파악과 사안발생시의 철저한 보고가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동부의 경우에도 신체활동의 증진보다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시명을 지키는 점이 중 요하다고 설명하였다(문부과학성, 2013.3. 13a).

체벌금지에 관한 사항은 일찍이 일본 법무청이 제시한 「아동징계권의 한계에 대하여」(법무청, 1948 12.22에서 부터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출석정지제도의 운용의 내용에 관하여」(2001.11.6등의 문건에서 "체

벌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육법 제 11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 "하고 있음을 밝혔고, 「인권교육·계발에 관한 기본계획」(2002. 3 29)에서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교직원은 근무장소인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지도하고 대응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이후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에서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의 지도」와 「학교교육법 제 11조에 규정하는 학생의 징계·체벌의 내용」등의 기준을 정리하면서 2007년 2월의 학생 체벌 관련 판례를 징계와 체벌에 관한 해석 및 운용 근거로 삼았다(문부과학성, 2007.2.5).

학생지도와 관련한 정부의 지도 및 통지 등에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체벌을 피하고 교원이 인내심을 갖고 지도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의 징계는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서의 퇴학, 정학, 훈고 또는 그 외학생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통상적인 징계권 범위 내에서의 주의, 질책, 특별지도, 숙제, 청소, 당번, 문서지도"등을 말한다. 그리고 "징계와 체벌의 구별에 관해서는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안별로 살펴볼 것을 전제로 하되, 주관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고려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징계의 내용이 "신체에 관한 것(육체적고통을 수반하는 것)일 때"일반적으로 체벌로 본다. 다만이 경우학생의 폭력행위에 대한 제지나 위험회피 등부득이한 경우일 때에는 정당방위로서 민·형사상 책임을면할 수있다(문부과학성, 2013.3 13).

- ※ 학교교육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체 벌 등에 관한 참고사례(문부과학성초등중등교육국장 통지(文科初)제1269호 별지, 2013.3.13.
- 체육 수업 중 위험한 행위를 한 학생의 등을 발로 밟는 것, 학생의 얼굴을 꼬집거나 뺨을 때리는 것, 학생의 팔

을 강하게 잡아끄는 것, 급식시간에 수저 등을 학생에게 던지거나 수업시간 중필기구를 학생에게 던지는 것 등은 체벌로 보고, 방과 후에 교실에 남게 하는 것, 수업 중에 일어서 있게 하는 것, 과제나 청소활동의 부과나당번활동의 잦은 부과, 수업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견학시키는 것 등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로서는 학생이 교원이나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진압하는 행위나 수업 등의 교육행위에 심하게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제지시키거나 격리하기 위한 신체적 접촉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문부과학성은 학교 안팎에서의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학생의 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하거나폭 력행위,이지메,등교거부,중도퇴학,자살,게임중독과 같 은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별도로 안내하고,이의 해 결을 위한 상담,관계기관과의 연계,생활지도 관련 연수 강화,체험활동 증진 등을 제안하였다(문부과학성, 2013. 3.13a; 2013.8 96.

최근에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체벌 등의 방지에 관한 대책 추진 관련 법률안(체벌등방지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하였다(민주당, 2013. 6. 19).이 법안은, 2012년 말의 오사카시(大阪市) 사쿠라노미야(桜宮)고교의 학생 자살 사건에 대한 대책⁹으로 발족한 「이지메 및 체벌방지 대책워킹 그룹(Working Group)」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 입법청원 된 것으로서, 「학교교육법」 제11조의 체벌금지는 물론 '폭언 및 기타 교육적 지도 범위를 일탈하는 행

위'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체벌의 범위를 '육체적 고 통'에서 '정신적 고통'까지 확대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림 1〉 체벌 방지에 관한 대책 추진 관련 법률(안) 개요

자료: 민주당(2013, 6, 19), 의원입법: 참의원회 제출,

체벌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그효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립학교 교원 인사행정현황 조사를 보면, 2011년도 현재(2012년 발표)일본 내학교의 징계, 훈고 등의 처분 중체벌에 관련된 사항은 49년으로 최고건수를 기록한 2003년에 비하여 약18%(90건) 감소한 수준이다.

^{5) 2012}년 12월 농구부 지도교사(47세)로부터 체벌을 받은 농구부 주장 2학년 남학생이 다음날(23일)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13년 1월 22일, 오시카 시장은 관련 사인의 조사결과 농구부 이외 여러 동이리와 운동부에서도 고문 수준의 체벌과 폭언이 난무하였다고 밝혔고,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이 학교의 농구부와 배구부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농구부 교사는 면직처분을, 배구부 교사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농구부 교사는 2013년 7월 4일 폭행 및 상해혐의로 오사카 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다(http://ja.wikijedia.org/wiki/大阪市 並按宮高等学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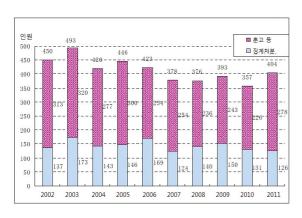
⁶⁾ 이 조사는 교직원의 정계처분,지도력 부족 교원 심사결과 및 조치 교직원 휴직 상황 교원평가, 교장·교감 임용상황, 교직원 재임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교육위원회의 교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공립학교(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2012년 현재 47개 도도부현과 20개 지정도·시교육청 등 총 67개 교육위원회의 현황을 포함한다.

〈표 2〉 교사의 징계처분 등 현황(2011년)

	징계:	체분	훈고	권고	겨		참고: 최근 10년간 최대
처분사유	2011년	전년 대비	를 illo	사직	2011년	전년 대비	건수 대비 (년도)
교통사고	326	▲ 23	2,280	0	2,606	▲ 30	2,636(2010년)
쟁의행위	0	С	0	0	0	q	13,623(2009년)
체벌	126	▲ 5	278	0	404	47	494(2003년)
외설행위 등	151	▲ 1	18	1	170	▲ 5	196(2003년)
	35	▲ 10	51	0	86	▲269	371(2009년)
국기게양· 국가제창 관련	47	26	5	0	52	28	200(2003년)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취급	39	▲ 14	174	0	213	A	286(2009년)
기타 복무행위 위반	136	▲ 18	652	0	788	252	4,309(2009년)
계	860	▲ 45	3,458	1	4,319	15	17,482(2009년)

자료: 문부과학성(2012 12 26) 2011년도 공립학교교원 인사행정 현황조사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체벌 관련 징계 건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림 2〉 체벌 관련 교사 징계 추이(최근 10년간)

자료: 문부과학성(2012, 12, 26), 201년도 공립학교 교직원 인사행정 현황조사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수 현황을 학교별로 보면, 전체의 445%가 중학교에서, 344%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였다.이는 특별활동(동아리, 운동부)시 체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체벌 관련 피징계 교사 수 현황2011년도》

(1)		징계처분자 수						훈고 등 의원 처분자 면직자		
처분별	면직	정직	감봉	경고		계	^'뜻^'	Ĩ	합계	
현황	0	20	52	54	1	26	278	0	404	
					. 1					
(2) 학	고별 현홍	피징계	피징계교원 수		비율(%) 전체		재직 교	비율(%)		
	학교		81	20.2	2	413,0		024	44.8	
중	학교		180	44.5	5	236,43		433	25.7	
고등	등학교		139	34.5	5	190,9		909	20.7	
중등교	교육학교		0		0		1,234		0.1	
<u></u> 특	수학교		4)	79,43		432	8.6	
	계		404)	911,03		032	100	

자료: 문부과학성(2012, 12, 26), 2011년도 공립학교 교직원 인사행정 현황조사

문부과학성은 또한 2012학년도에 대한「체벌 실태과악조사」를 2013년 1월과 5월, 2차에 걸쳐 실시하고 2013년 8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생체벌실태를 과악하고 철저히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실시"한 이 조사는 2013년 1월 23일 초등중등교육국장 및 스포츠·청소년국장의 통지에 따라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는 통신제 학교를 제외한 전체 국공사립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3년 4월의 제1차 보고에서는 공립학교의 체벌현황을 개괄적으로 공표하고, 8월의 제2차 보고에서는 제1차보고 결과를 사안별로 검토하고 국공사립학교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집계하였다. 학생 및 학부모 조사는 정확한 실태과악을 위해 각 지역별로 별도로 구성・실시하고이를 통해 새로 과악된 사안을 제2차 보고에 포함하였다 (문부과학성, 2013, 8.9%).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0% 정도의 학교에서 체 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과 관련된 교 사는 전체 교사의 약 0.6%, 학생은 전체의 약0.1%로 조사 되었다. 학생지도시의 체벌은 주로 수업이나 특별활동 중 에 발생하고, 그 장소는 주로 교실과 운동장이었다. 체벌 은 대부분 교사가 학생을 직접 손으로 때리는 행위로 표 현되었으며, 그로 인한 부상은 거의 없었으나 부상을 입 은 경우에는 타박 · 외상 등으로 나타났다.

〈표 4〉학생체벌 현황(국공사립 전체 2012학년도)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구분	발생 학교 수(A)	전체 학교 수(B)	발생률 (A/B) (%)	발생 건수 (C)	전체 교원 수(D)	발생률 (C/D) (%)		전체 학생 수(F)	발생률 (E/F) (%)
소학교	1,181	21,460	5,50	1,559	418.707	0.7	2,717	6,764,619	0.04
중학교	1,729	10,699	16,16	2,805	253,753	1,11	5,853	3,552,663	0.16
고등학교	1,190	5,055	23.70	2,272	249,250	0.91	5,508	3,355,609	0.16
중등교육학교	4	49	8.16	11	2,207	0.50	11	28,644	0.04
특수학교	38	1,059	3.59	47	82,779	0.06	85	129,994	0.07
고등전문학교	10	57	17.54	27	4,337	0.61	34	55,243	0.06
계	4,152	38,349	1082	6,721	1,011,033	0.66	14,208	13,886,774	0.10

자료: 문부과학성(2013, 8, 9a), 체벌 실태파악 제2차보고,

〈표 5〉 체벌시의 상황(국공사립 전체 2012학년도)

체벌	상황		체벌 장소			
구분	발생건수	비율(%)	구분	발생건수	비율(%)	
수업 중	2,136	31.8	교실	2,352	35.0	
방과후	644	9.6	교무실	144	2.1	
쉬는 시간	802	11.9	운동장,체육관	2,333	34.7	
특별활동(동아리)	2,047	30.5	학생지도실복도,	161	2.4	
학교행사	265	3.9	계단	712	10.6	
Home Room	233	3.3	기타	1,019	15.2	
기타	604	9.0				

자료: 문부과학성(2013 8 9a) 체벌 실태파악 제2차보고

(표 6) 체벌의 형태 및 피해 상황(국공사립 전체, 2012학년도)

체벌	형태		피해 상황			
구분	발생건수	비율(%)	구분	발생건수	비율(%)	
주먹으로 때림 몽둥이로 때림 발로 참 밀기, 넘어뜨림 때리고 발로 밟음 기타	4,101 353 617 179 410 1,061	5.3 9.2 2.7 6.1	골절 · 염좌 고막손상 외상 타박상 코피 머리카락을 자름 기타 부상 없음	40 65 207 478 93 13 220 5.605	3.1 7.1 1.4 0.2 3.3	

자료: 문부과학성(2013, 8, 9a), 체벌 실태파악 제2차보고,

〈표 7〉체벌사안 파악의 계기 및 수단(복수응답)

체벌 파악 계기				체벌 파악 수단			
구분	발생건수	비율(%)		구분		발생건수	비율(%)
학생이 호소	2,700	40.2	해당	교사		6,602	98.3
학부모가 호소	2,345	34.9	기타	교사		1,145	16.7
교사가 신고	3,399	50.6	피해	학생		4,562	68.0
제3자의 통보	724	10.8	기타	학생		1,163	17.3
기타	228	3.4	학부.	모		2,517	37.5
			기타			136	2.0

자료: 문부과학성(2013, 8, 9a). 체벌 실태파악 제2차보고.

이들 보고는 생각보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체벌이 그 양과 질에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 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통지 (25문과초제 574호, 문부과학 성, 2013 8.96를 통하여 전국 국공사립학교(대학 부속학 교 포함)가 실태 파악 결과를 토대로 그간 이루어진 체벌 의 부적절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미연에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초기대응과 재발 방지책을 강 화할 것을 당부하였다.체벌의 미연 방지 대책으로서는 1) 교내 연수 등을 통해 체벌금지 의식을 확산하고, 각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근절 지도 방침을 확립할 것, 2) 지도가 어려운학생에 대해 학교 내에서 조직적 지도체제를 마련 하여 특정 교사가 학생지도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것, 3 특히 동아리 에서 많은 체벌이 나타나는 바,관련 지도자 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실태파악 과 대응책으로는 1) 지속적으로 체벌의 실태를 파악하려 고 노력할 것, 2) 체벌에 대한 신고 및 상담체계를 철저 히 하여 조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안에 따른 엄정한 처분을 두어 교사의 상습적 체벌이 나타날 경우나 교사 및 학교가 사 실을 은폐할 경우에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설 명하였다.

^{7) 2013}년 5월 27일 보고된 「운동부 활동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조시연구 보고서」에서는 운동부 활동의 지도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지도자(교원 및 외부 지도자)에게 적절히 교육하여 체벌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노력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 폭력행위,이지메,등교거부,중도퇴학,자살,게임중독과 같은 학생의 문제행동은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학령인구 감소,학력저하,교원의 지도력 부족 등 학교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일본의 학교는 다시금교사와 학생의 인성에 주목하고 있다.중고교 입시체제로인해 한국보다 교육현장의 위계와 서열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교육은 '몰아붙임'의 영향을받은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들어 학생의 인권존중 및 체벌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교육 담당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리, 문부과학성 및 지역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체벌 방지대책을 홍보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 상담 시스템이나 교내 관계 개선 프로그램, 교권확립을 강화할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可显显显错(图图形对 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学校教育法(昭和二十二年三月三十一日法律第二十六号) 最終改正:平成二三年六月三日法律第六一号. http://bwe-gov.go.jp/htmlcata/S22/S22HOO26.html
- 世早정(1948 12 22). 아동징계권의 한계에 대하여, 児童 懲戒権の限界について(昭和23年12月22日付け法務庁 法務調査意見長官回答). http://www.pref.ibaraki.jp/ bukyoku/soumu/somu/reiki_int/reiki_honbun/o40011530 01.html (이바라키현(茨城県) 자료)
- モ부과학성(2007. 2.5).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관하여 (통지, 18문과초 제1019호), 問題行動を起こす児童生徒に対する指導について(通知, 18文科初第1019号).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7020609.htm

- 문早과학성(2009.1.30).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취급에 관하여, 学校における携帯電話の取扱い等について通知, 20文科初第11569). http://www.mext.go.jp/b_menu/hakusho/nc/1234695.htm
- 문부과학성(2012 12 26, 2011년도 공립학교교원 인사행정 현황조사, 平成23年度公立学校教職員の人事行政状況調査について、http://www.mext.go.jp/a_menu/shotou/jnj/1329089.htm
- 문부과학성(2013 1.23. 체벌금지 철저 및 체벌에 관한 실태과악에 대하여의뢰, 24문과초 제1073克), 体罰禁止の徹底及び体罰に係る実態把握について(依頼, 24 文科初第1073号).http://www.mext.go.jp/a_menu/shotau/setoshidbu/1330372.htm
- 문부과학성(2013.2.21). 체벌에 관한 징계처분 현황(2011 년도), 体罰に係る懲戒処分等の状況一覧(平成23年 度).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 /detail/_jcsFiles/afie/klfile/2013/02/21/1331127_04.pdf
- モ부과학성(2013.3.13) 利벌금지 및 학생이해에 기반한 지도 철저에 대하여(통지,24문과초 제1269호), 体罰の 禁止及び児童生徒理解に基づく指導の徹底について (通知,24文科初第1269号). http://www.mext.go.jp/ a_menu/shotou/seitoshidou/1331907.htm
- 문부과학성 (2013 3. 13b). 체벌금지 및 학생이해에 기반한 지도의 철저에 대하여(통지) 별지 학교교육법 제 11조에 규정하는 학생의 징계・체벌에 관한 참고사례, 学校教育法第11条に規定する児童生徒の懲戒・体罰等に関する参考事例.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toshidou/1331908.htm

les/afieldfile/2013/04/26/1334243_01_1_1.pdf

- 문부과학성(2013. 5. 2). 체벌금지에 관하여, 体罰の禁止について.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3/05/02/1334083__01.pdf
- 문早과학성(2013.8.9b). 利벌근절을 향한 철저한 대처에 대하여(25문과초 제574호), 体罰根絶に向けた取組の 徹底について(通知, 25文科初第574号). http://www.mextga.jp/a_menu/shotou/seitoshidou/1338620.htm
- 민주당(2013 6.19. 의원입법「체벌 방지에 관한 대책 추진 관련 법률인」 참의원회 제출, 議員立法「体罰等の防止に関する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を参院に提出. http://www.dpj.or.jp/s/article/102812_1.
- 위키피디아. 오사카시 사쿠라노미야고교. http://ja.wikipeda.org/wiki/大阪市立桜宮高等学校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학회 활동 안내 ·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 제168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13년 10월 25(금) 14:00~26일(토) 16:00

• 장소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 주제 : 한국 교육리더십에 대한성찰과 미래 방향

학회 회의 개최

☑ 제2차 학술위원회 회의

•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16:00

• 장소 : 중앙대학교 R&D센터

• 안건 : 2013년도 학술대회 초안기획 및 추계학술

대회 주제 설정

학회 주요소식

☑ 제167차 춘계학술대회 중앙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67차 춘계학술대회가 2013년 5월 11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R&D센터에서 교수,대학 원생,연구자,교육행정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비전과 교육행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164차 춘계학술대회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열린 의미있는 학술대회가 되었다.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과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연구원 및 교육행정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세션별로열띤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41대 회장인 이윤식 교수의 개회사를시작으로 곽병선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원장)가 '박근혜정부교육정책 비전고 교육행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본학술대회는 '기획주제세션', '자유주제 세션', '신진학자 세션', '학문후속세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기조강연자 1명, 발표자 15명, 토론자 4명이 참가하였다. 기획주제 세션에서는 발표자의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의 토론과 청중토론이 진행되었고, 자유주제 · 신진학자 · 학문후속세대 세션에서는 발표자들의 발표에 이어 청중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조강연 발표 곽병선 교수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의 괴제' 발표와 토론(주제발표1) 천세영 교수(시회자), 김성열 교수(발표자), 배상훈 교수(토론자), 한유경 교수(토론자) (좌측부터)



'대학입시 간소화와 교육행정의 과제' 발표와 토론(주제발표2) 천세영 교수(사회자), 김미란 교수(발표자), 양정호 교수(토론자),김동석 교수(토론자) (좌측부터)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와 교육행정의 과제 발표와 토론(주제발표3) 조동섭 교수(사회자), 송기창 교수(발표자), 이영 교수(토론자), 반상진 교수(토론자) (좌측부터)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과 교육행정의 과제' 발표와 토론(주제발표4) 조동섭 교수(사회자), 안양옥 교수(발표자), 김갑성 교수(토론자), 안선회 교수(토론자) (좌측부터)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1호	2월 28일	4월 30일		
제31권	2호	5월 31일	<i>7</i> 월 31일		
(2013년)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0일	12월 31일		

⊙ 논문 심사 적부 판정

논문본 심사에 앞서 '교육행정학' 논문에 대한 적부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거칠 예정('적'으로판정되면논문 심사진행, '부'로 판정되면 심사비 환불 및 심사진행 불가)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 ② 이를 기준으로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 심사료:** 100,000원(외국어 논문심사료 150,000원)
- **☑ 게재료:** ① 입금시기: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개제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 입금계좌: 농협 302-0642-8579-11 예금주: 이윤식 (문의: 편집간사 010-9374-4832)
- ☑ 기타: 접수마감 당일 자정까지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논문은 다음호 심사로 이관됨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 (2013년 5월 1일~7월 31일)

• 개인회원

강민구, 김대영, 김상일, 김인숙, 김지혜, 도정철, 민정욱, 박대휘, 박서현, 박선환, 서용희, 성백선, 송정호, 우원재, 이주연, 이진숙, 이치호, 임미영, 임종헌, 정시영, 정재훈, 최규연, Maurice Lineman

☑ 연회비 납입현황 (2013년 5월 1일~7월 31일)

• 개인회원

강석봉, 곽창신, 김병주, 김상돈, 김상현, 김성열, 김세호, 김옥예, 김왕준, 김용일, 김이경, 김정현, 김태호, 김현준, 김희규, 나민주, 나 임, 남궁윤, 남해진, 노지영, 류충현, 문한종, 박남기, 박병선, 박상완, 박선형, 박소영, 박용원, 박철웅, 서지연, 손성욱, 송송이, 송유진, 신보현, 신재흡, 양은주, 윤소현, 이광수, 이광현, 이인회, 이일용, 이주연, 이진영, 이창열, 이태우, 임연기, 정인순, 정하보, 조영재, 조영하, 주현성, 최상영, 한경자, 허병기, 허은정

• 기관회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 연회비를 납부하시고도 위 명단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연회비 납입 시 반드시 '성명'과 '연회비'로 기재하여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됩니다. 아울러 회비가 2년 이상 연체된 회원들은 학회 홈페이지 자료 접근 제한되며 회원으로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회복은 학회 회칙 제9조 내지 제 10조를 참조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011-9952-6559총무간사).
- 학회 회비가 연체된 경우는 학회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학회지 배송, 학회지 투고, 소식지에 동향 기재, 부회장 투표권 등]. 연체된 회비는 학회 홈페이지 로근인 후 '결재정보확인' 버튼을 누르면확인 할 수 있으며 연체된 내역을 개인 메일이나 유선전한로 개별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연회비, 학회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연회비 안내

- •입회비 10,000원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회비납부: 302-0642-8579-11(농협), 예금주: 이윤식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 •신용카드 납입 가능(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후에 학회 메일(kssea1@hammail.net)이 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eas.or.km)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 메일 (kssea1@harmail.ne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41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인천대학교 사회대 창의인재개발학과 사무실(13-215호실)

• E-Mail: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사무국 011-9952-6559
• 회 장: 이윤식(010-3324-8166)
• 부회장: 박세훈(010-8725-2740)

사무국: 김왕준 사무국장(경인교육대학교 010-9483-9290)
 이효신 총무간사(인천대학교 011-9952-6559)
 김무영 편집간사(영남대학교 010-9374-4832)